

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992. 11. 9.
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안 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0월 29일 남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: 1992년 10월 30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(1992년 11월 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허병태)

가. 제안 이유

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
지급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(대통령령 13734호)

나. 주요 골자

0. 조례 제명 개정

- “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”를 “부산직할시남구
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”로 개정

0. 방법수당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함(근거 마련)

0. 방법원임용이전 “자율방법경력년수”에 따라 가산금 차등지급제 신설

0.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요지 (전문위원 이무상)

본 조례를 검토해보면 고용직(방법) 공무원으로서 경찰에 파견 근무하는 방법원의 경우 열악한 환경 및 특수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방법 수당이 지급되어 장기 경력 공무원들은 물론 단기 경력 공무원들에게도 수당이 현실성이 없음이 지적되어 온 것을 장기 경력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장기 경력 공무원은 물론 단기 경력 공무원들에게도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(전문의) 및 일반의 공무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전문의 554,000원 및 일반의 471,000원 지급되는 의료 업무 수당 지급을 별표1,2,3와 같이 장기 근속 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차등 지급하므로써 특수 공무원 확보 용이 및 근무 의욕 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 조례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“ 없음 ”

5. 토론 요지

“ 없음 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

“ 없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“ 없음 ”